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51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고동진·박덕흠·박형수
김상훈·안상훈·송석준
주호영·이인선·성일종
김위상·이달희·최보운
김예지·박준태·우재준
의원(15인)

제안이유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임.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부장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의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을 대통령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3항).

나.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부품·장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협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조사·분석, 정책 지원·제안,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연구,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의 장”을 “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의 장과 제18조의2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회의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재·부품·장비 협회) ①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부품·장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 수행 및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4.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 분석
 5.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안
 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
· 연구
 7.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
한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회의 설립 · 조직 · 운영 · 업무 · 재정 및 행정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② (생 략)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 회의 장을 포함한다</u>)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 ----- <u>제5항에 따</u> <u>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u> <u>의 장 과 제18조의2에 따른</u> <u>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u>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8조의2(소재·부품·장비 협</u> <u>회) ①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u> <u>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u> <u>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u> <u>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u> <u>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u> <u>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u>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부품·장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 수행 및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분석

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안

6.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연구

7.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설립·조직·운영·업무·재정 및 행정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